

#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및 발의일자 : 김영현의원 외 7인(2024. 06. 03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06월 04일

다. 상정일자

- 제315회 포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  -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(2024. 06. 26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영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장기면 신창리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,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해수욕장 신규 지정에 따른 신창해수욕장 명칭 및 소재지 추가(안 별표 1)
-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일원화(안 제2호)
  - 4. “관리단체” 삭제 → “수탁자” 로 일원화
-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정비(안 제9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## 3. 관련법령

-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장기면 신창리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,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  
- 주요 내용으로
  - 안 별표 1에서 해수욕장 신규 지정에 따른 신창해수욕장 명칭 및 소재지 추가사항을 규정
  - 안 제2호에서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일원화한 사항을 명시.
  - 안 제9조에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정비 사항을 규정
  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
- 종합검토 결과,  
장기면 신창리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  
- 다만, 해수욕장의 시설·환경기준 및 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장 운영과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